

[2021학년도 2학기 체류기간연장 단체 접수제 안내]

<체류기간 연장 신청 단체접수 서비스 안내>

1. 단체접수 서비스 : 유학생지원센터에서 비자관련 신청서류를 취합한 후 대리로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
 ※ 단체접수와 개별접수의 제출서류는 동일함(단체접수로 제출서류 간소화 아님!!)

2. 대상 : D-2 비자 체류기간 연장(2021. 12. 31.자 체류기간 만료자에 한함)

※ 김해, 밀양 체류지의 경우 김해출장소 방문 대상임

3. 서류접수 기간 (접수 시간대 엄수)

4차) 2021. 11. 29.(월), 11. 30.(화) 9:20 - 11:40, 13:20 - 16:00

5차) 2021. 12. 23.(목), 12. 27.(월) 9:20 - 11:40, 13:20 - 16:00

※ 코로나19로 인해 동시간대 1명만 방문 가능하므로, 사전 예약제로 실시함

※ 예약 방법

- 전화 예약만 가능하며 예약전화 가능 시간은 2021. 11. 22.(월) 오후 1시30분 ~ 4시30분에 한함
- 아래 표를 참고해서 국제교류본부(☎ 051-510-3353)로 전화 예약(수학과정, 학번, 이름)
- 선착순이며 1일 15명 한정

회차	시간	11/29(월)	11/30(화)	12/23(목)	12/27(월)
1	9:20				
2	9:40				
3	10:00				
4	10:20				
5	10:40				
6	11:00				
7	11:20				
8	13:20				
9	13:40				
10	14:00				
11	14:20				
12	14:40				
13	15:00				
14	15:20				
15	15:40				

※ 출입국.외국인청에 4차의 경우 12월 3일에, 5차의 경우 12월 30일에 서류 제출하므로, 재정능력입증서류는 접수 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접수처는 서류를 작성할 공간이 없으므로 미리 신청서 작성 후 방문해야 함

4. 제출장소: 본관 입구 오른쪽 외부 코로나19 임시사무소(본관 건물 내부 아님)

본관 입구 도착 후 국제교류본부(051-510-3353)로 전화하고 임시사무소에서 대기하면 됨

5. 제출서류

[재학생 기준]

- ① 외국인등록증
- ② 여권사본(본인 사진 있는 페이지 전체를 실제 크기 그대로 A4 용지 세로 방향으로 복사)
- ③ 수수료 6만원(현금, 만원권 이상) - 정부초청장학생은 장학증명서 제출 시 면제
- ④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사진 부착하지 않음)
- ⑤ 성적 증명서
- ⑥ 재학 증명서
- ⑦ 체류지 입증서류
- ⑧ 재정능력입증서류(1년 체류: 1,000만원 이상, 6개월 체류: 500만원 이상,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경우 면제)
- ⑨ 결핵검진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추가 제출서류]

※ 수료 후 연구생(논문만 남은 상황, 수료후 연구생 등록 필수!)

: 재정능력입증서류,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수료증명서

- 재정능력입증서류는 6개월 혹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만큼의 재정능력 증명 필요.

(단, 장학금 증명서 제출 시 참여 연구 과제가 본인 논문과 연관 있다는 지도교수의 확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는 논문지도 일정을 교수님께서 기재하고, 서식 하단에 있는 유학 담당자는 유학생지원센터(본관 1층) 비자업무 담당자이므로 비워두고, 서류 작성 후 방문해서 서명 받아야 함.(단체접수 신청 전까지 완료할 것)

- 수료증명서는 본관 남쪽 입구 외부에 있는 자동증명발급기 또는 학생지원시스템 인터넷 증명발급에서 출력

※ 학부생 수학연한(8학기) 초과 후 학점 취득하는 학생

: 재정능력입증서류, 수업연한 초과자 학점취득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사유서(본인작성)

- 학점취득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는 세부 일정 및 사유를 교수님께서 기재하고, 서식 하단에 있는 유학 담당자는 유학생지원센터(본관 1층) 비자업무 담당자이므로 비워두고, 서류 작성 후 방문해서 서명 받아야 함.(단체접수 신청 전까지 완료할 것)

※ 대학원생 수학연한(4학기) 초과 후 학점 취득하는 학생

: 재정능력입증서류, 수업연한 초과자 학점취득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 학점취득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는 세부 일정 및 사유(4학기 내 이수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여야 함)를 교수님께서 기재하고, 서식 하단에 있는 유학 담당자는 유학생지원센터(본관 1층) 비자업무 담당자이므로 비워두고, 서류 작성 후 방문해서 서명 받아야 함.(단체접수 신청 전까지 완료할 것)

: 학점 취득 후 수료후연구생이 논문작성으로 또 연장해야하는 경우 학점 취득과 논문 작성은 각각 연장신청 함

※ 수료 후 최대 연장 가능 기간 : 학부 2년, 석사 3년, 박사 5년(최대 연장 가능 기간 초과 불가)

※ 입학 후 최대 연장 가능 기간 : 학부 6년, 석사 6년, 박사 8년(최대 연장 가능 기간 초과 불가)

1) 재정능력입증서류

재정능력입증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a. 잔고증명서 - 국내에 있는 은행이 발급한 본인 잔고증명서만 인정(해외서류 불인정)

b.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증명서로 대체(단, 보증기간 중 지도교수 당 1명의 학생에게만 장학금 지급 가능하며 지도교수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추가 제출)

- c. 입금내역서 – 석사 또는 박사과정 중 인건비를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입금내역서 제출
매월 1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교내 연구활동으로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가 면제 대상이므로, 지도교수 확인서 및 단과대학장 이상 교원 추천서 제출

2) 체류지입증서류 안내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혹은 기타 증빙서류 제출

- a. 거주지 임대계약서 및 거주 / 숙소 제공 확인서 (첨부파일 참고) :
- 거주지 임대계약서에 본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임대계약서 사본만 제출
 -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친구 혹은 가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추가 제출.
친구 혹은 가족 등 계약서에 성명 기재된 사람이 거주/숙소를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
- b.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 홈페이지 (<https://dorm.pusan.ac.kr/dorm/main>)에서 '원생확인서' 출력

3) 결핵검진확인서 안내 : 2016년 3월 2일 이후 결핵 고위험 국가 출신 학생이 최초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3개월 이내 발급된 결핵검진확인서 필수 제출

- ※ 검진확인서는 봉투에 넣어 투봉 및 날인되어야 함
- ※ 2016년 3월 2일 이후 이미 출입국 혹은 한국영사관에 결핵검진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출 생략
- ※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봉인된 확인서만 제출 가능(법무부지정 의료기관 현황 및 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참고)

▶▶결핵 고위험 국가 :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벨라루스, 모잠비크, 몰도바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파푸아뉴기니, 타지키스탄, 페루

6. 소요기간: 약 3~4주

7. 결과 통보 및 외국인등록증 수령: 유학생지원센터에서 수령 (추후 이메일(visa@pusan.ac.kr)로 알림)

8. 유의사항

1) 개인적인 사정으로 단체접수제 신청이 힘들 경우, 개별적으로 출입국 웹사이트 (<https://www.hikorea.go.kr>) 에서 전자민원 또는 방문예약 후 개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체류기간 연장 신청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될 때까지 출국 불가.

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후 입출국 가능.

3) 체류지 변경신고

○ 주소 이전 시 14일 이내

- 신주소지 구청, 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 이전신고

- 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부과